

학점인정 관련 조항(선수학점, 인정학점, 편입학학점인정)

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2024.09.01.

제25조(선수학점)

① 각 대학원은 제23조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하여 추가로 선수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.

1. 일반대학원 : 하위 학위과정의 학과(전공)과 상이한 학과(전공)에 입학 한 자

② 선수학점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

제26조(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교과목의 연계)

① 본교 학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사학위과정의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가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6학점 까지 대학원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 2024.09.01.

제9조(선수학점 이수)

① 일반대학원에 비동일계로 입학한 경우 학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규 교과학점 이외에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이상,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12학점 이상을 하위 학위과정에서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소정의 학점 인정서에 학위지도교수와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선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
⑤ 선수학점은 수강신청학점, 졸업이수학점 및 평균평점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.

제11조(입학전 이수학점 인정)

① 각 대학원 입학 전에 국내외 타 대학원의 동등 학위과정에서 소속 대학원 교과목에 포함되는 과목을 이수한 학점은 소정양식의 학점 인정서에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신청할 경우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6학점, 박사과정은 9학점 이내에서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받을 수 있다. 다만, 편입학생 학점인정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.

② 본교의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본교의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여 B학점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초과분에 한하여 제1항의 절차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.

일반대학원내규 2024.09.01.

제16조(편입학자의 학점인정)

편입한 자는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석사학위과정은 6학점까지,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까지, 통합과정은 21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.